

(건물용)

열수급계약 해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건물명			건물소재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해지내용								
해지희망일			※해지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 열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다른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귀사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주)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